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3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가.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내용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또한, 장학생 선발 규정을 신설하고 진흥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내용(안 제4조)

나. 장학생의 선발(안 제4조의2)

다. 사업계획 승인 등(안 제12조)

라.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제재(안 제15조)

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### 가. 제안배경 및 필요성

- 최근 충청북도는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일자리 제공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·정책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
- 따라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함)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인재 발굴·양성 사업에 유학생 유치·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함

### 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안 제4조는 진흥원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으로
  - 조문을 전문개정하여 인재 발굴 및 양성 사업, 평생교육 사업, 그 밖에 국가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,
  - 인재 발굴 및 양성 사업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체계가 적절하고 타당함
- 안 제4조의2는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학생 선발시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고, 심의 시 충청북도 내시·군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장학생 선발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함

- 안 제12조는 진흥원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예산서 등의 제출 기한을 ‘2개월 전’ 에서 ‘1개월 전’ 으로 개정하여 충청북도 예산편성 추진 일정과 일치하도록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함
- 안 제15조는 진흥원이 운영 등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재정지원 중지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그 밖에 잘못 사용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음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6조, 안 제11조, 안 제13조, 안 제14조, 안 제15조)
- 담당 부서인 과학인재국은 개정안에 대해 ‘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’ 라는 의견을 제시함

#### 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개정안은 진흥원에서 ‘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’ 사업의 입법·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- (타당성) 또한, 전문개정을 통해 사업 내용을 성격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장학생 선발 시 중복 수혜 방지, 예산서 등의 제출 시기 완화 등은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음
- (법적합성)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